

의안 번호	1059	【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4. 4. 25.(금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4. 29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5. 7.(수)

2. 개정이유

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자격을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위원 자격에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회장 추가(안 제2조제2항)
- 나.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로 정비
(안 제2조제2항, 제6조제3항)

4. 관련법령

- 가.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
- 나.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인 『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』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을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
- 협의회의 구성원에 『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회장』을 추가하고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『자』를 『사람』으로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
-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에 적합하고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.

※ 관련법령

[통합방위법]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 <개정 2013.3.22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 2. 통합방위 대비책
 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 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-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5.21]

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
②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 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 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 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 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 5.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5.21]

[통합방위법 시행령]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8.20>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병무관서의 장
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0. 지방의회 의장
11. 지방소방관서의 장
12. 지역 재향군인회장
13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 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 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-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-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2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3. 취약지역 대비책

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[전문개정 2009.11.17]
- 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09.11.17>]